

특례사항

01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 소급 적용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 * 주요내용 : 2010. 2. 11. 이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등록기준의 특례 적용 신청 가능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건설업 등록신청서]

02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 특례 적용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 * 주요내용 : 동일 업종의 주력분야 추가 등록 및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 특례 적용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건설업 등록신청서]
※ 기존 등록업종의 경우 신고 불필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TEL : 054) 650-6331

본 홍보물은 건설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있는 지역 건설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예천군에서 자체제작 하였습니다. 제작일(2022년 2월) 이후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즐거로운 건설생활 안내서



 예천군

01

건설업 현황

(2022. 2. 24. 기준)

- * 종합건설업 : 32개 업체, 37개 업종 (관리청 :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 * 전문건설업 : 188개 업체, 241개 업종, 260개 주력분야

예천군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건설업" 검색 ➡ 전문건설업 현황)

02

전문건설업종 현황 (14개 업종)

업 종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주력분야	업종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1.토공사	2인	2인	1.5억원
	2.포장공사	3인		
	3.보링·그라우팅 공사	2인		
2.실내건축공사업	4.실내건축공사	2인	2인	1.5억원
3.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	5.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2인	1.5억원
	6.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4.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7.도장공사	2인	2인	1.5억원
	8.습식·방수공사	2인		
	9.석공사	2인		
5.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10.조경식재공사	2인	2인	1.5억원
	11.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6.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철근·콘크리트공사	2인	2인	1.5억원
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3.비계·구조물해체공사	2인	2인	1.5억원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상·하수도공사	2인	2인	1.5억원
9.철도·궤도공사업	15.철도·궤도공사	5인	5인	1.5억원
10.철강구조물공사업	16.강구조물공사	4인	4인	1.5억원
	17.철강재설치공사	5인		
11.수중·준설공사업	18.수중공사	2인	2인	1.5억원
	19.준설공사	5인		
12.승강기·삭도공사업	20.승강기설치공사	2인	2인	1.5억원
	21.삭도설치공사	5인		
13.기계가스설비공사업	22.기계설비공사	2인	2인	1.5억원
	23.가스시설공사(제1종)	2인		
	24.가스시설공사(제2종)	1인		
14.가스난방공사업	25.가스시설공사(제3종)	1인	1인	-
	26.난방시공업(제1종)	2인		
	27.난방시공업(제2종)	1인		
	28.난방시공업(제3종)	1인		
	29.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전문 또는 종합으로 전환

01

하도급 제한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25조의7
- *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금지 (예외규정 : 시행령 제31조2)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발주자가 서면 인정한 경우 인정)
-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재하도급 금지(예외규정 : 시행규칙 제25조의7)
- * 위반제재(법 제82조 제2항, 법 제96조 제4호)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02

건설업등록증 대여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 * 주요내용
 - (대여자)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 (대여받은자)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안됨
 - (알선자)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안됨
- * 위반제재(법 제83조 제5호, 법 제95조의2)
 - 등록말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0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 *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됨
- * 위반제재 (법 제80조,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법 제83조 제6호)
 -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2차·3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대여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말소



01

건설공사대장 통보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 시행령 제26조
- * 주요내용 : 원도급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을 통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제17호의2 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 위반제재(법 제81조 제3호, 제99조 제3호, 시행령 제89조)
(미통보시) **시정명령(준공일 전 통보)**
(시정명령 불응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통보 및 허위 통보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준공일 이후 통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02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통지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
- * 주요내용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통지
- * 신고방법 : 서면통지(별도 서식 없음)
- * 위반제재(법 제99조 제1호, 시행령 제89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03

하도급계약 통보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 *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서(재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해 통보
하도급 계약(변경, 해제 포함)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재하도급 승낙통보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제23호의 2, 제23호의3 서식
- * 위반제재(법 제82조 제1항 제4호, 법 제99조 제5호, 시행령 제80조)
(미통보시)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150만원 과태료**
(허위통보시) **1차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2차·3차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8천만원

01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 * 개정일시 : 2022. 1. 1. ~
- * 도입목적 :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 마련**
- * 개정내용
(대업종화)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14개 업종 통합**
(발주적용)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적용

02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도입



- * 도입일시 : 2022. 1. 1. ~
- * 도입목적 :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도입**
- * 개정내용 : 대업종화 이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
기존 전문업체의 경우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인정

0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 * 도입일시 : 2022. 1. 1. ~
- * 도입목적 :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의 업역 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업 지원**
- * 개정내용 :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중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가능
업종 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3년 12월까지만 유효, 2024년 1월에 등록말소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절차

예천군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실안내 → 민원사무편람
(“건설업” 검색 → 신청서 및 절차)

01 전문건설업 등록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 * 주요내용 :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맞추어 신고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건설업등록신청서】
- * 위반제재(법 제83조 제1호, 법 제95조의 2 제1호)
(부정등록시) **등록말소**
(무등록 시공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02 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3조
- * 주요내용 : 건설업의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에 맞추어 신고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건설업등록신청서】

등록기준 실태조사

0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적합여부 확인점검
- * 제출서류 : 실태조사 실시할 경우 요청자료에 한하여 기한 내 제출
- * 위반제재(법 제81조 제9호,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법 제83조 제3호 및 제3조의2, 제8의2호)
(실태조사 미보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 시)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시) **등록말소**

2018. 2. 4. 주기적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 강화

사무실 등록기준 체크사항

- 1 예천군 관내 등록된 주소지 여부
- 2 적법한 건축물 여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3 적합한 건물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여부
- 4 사무장비 및 통신시설(전화, 팩스) 구비 여부
- 5 내·외부 간판 등 업체 식별 표시 여부
- 6 독립 사무공간 사용 여부(복수의 건설사업자 사용할 경우 출입문 독립적 존재,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
- 7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유효 여부

주요신고사항



01 건설업등록증(수첩)기재사항 변경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 주요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본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소속 국가명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Tip 상법 제635조에 의거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 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 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 내에 등기 미신청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건설업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위반제재(법 제100조 제1호, 시행령 제89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02 건설업등록증(수첩)재발급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9조
- *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신청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03 건설업 폐업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법 제85조의2
- * 주요내용 :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사업자 등록 또는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신고하여야 함(단,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위법사실 등) 승계됨)
-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건설업 폐업 신청서】
- * 위반제재(법 제83조 제12호)
(사업자 등록말소 및 폐업신고 시) **등록말소**